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 사업재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제4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3”을 “957”로 하고,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88”을 “89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3</u>	<u>957</u>	+4
•	•	•	
•	•	•	
일반직 계	<u>942</u>	<u>946</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88</u>	<u>892</u>	+4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